

안녕하십니까?

평소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

귀 단체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.

○ 『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규칙』 제13조 제4항에는 ‘위원장은 회의장 사정과 회의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 및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고, 동 규칙 제1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방청인 수를 4명으로 제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, 노트북의 경우 녹음·녹취 등의 기능이 가능하므로 사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.

※ 참고로 제11회 위원회(’13.6.24)의 경우에는 언론사 기자 1명이 방청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○ 또한, 동 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는 “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”에 해당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동 규칙 제13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, 당시 회의에서 퇴장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본바,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, 토의사항, 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, 특히 방청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제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참고로, 동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진행에 앞서,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을 위해 방청 방법을 제한함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논의와 합의(Consensus)를 거쳐 제한하도록 하였으며, 이 내용은 방청인들에게 미리 공지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발전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,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(02-2180-3017)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